

5. 骨材採取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4-288號 1994.12.6

1. 개정이유

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며,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, 골재채취와 관련된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1년 단위로 지정하던 골재채취예정지를 골재부존량을 감안하여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육상골재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없이도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바다골재의 선별·세척을 전문으로 하는 자와 암석·자갈·모래등의 선별·세척·파쇄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시·도에 등록케 하여 관리하고자 함.
- 다. 골재채취가 제한되었던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2km이내(천연기념물과 명승은 4km이내)에서도 문화재지정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

는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.

- 라. 바다골재 등록요건중 접안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염분측정시험실의 설치기준을 신설함.
- 마. 골재채취업체의 자율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체의 법령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한국골재협회장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건설경제과 전화 500-290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